

外國의 關稅制度(4)

■ 오늘날 國際社會는 自國의 經濟的利益을 최대한 確保
코자하는 世界各國의 보이지 않는 戰爭이 보다 치열
해져가고 있고, 特히 貿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各國
의 競爭과 摩擦은 貿易障壁에 대한 關心을 급증시키
고 있다.

關稅는 各國의 産業保護와 財政收入 寄與를 위하여
活用되어온 政策手段이라 할 수 있고, 國家間 貿易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障壁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遂
行하고 있다.

本稿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發刊한 資料('92政策資料/
關稅)로서 우리 的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各國의
關稅率 體系 및 關稅 관련 制度에 관하여 整理한 것
이다. ■

Ⅶ. 스웨덴

金額	GDP對比 比重	世界市場 占有比(順位)
----	----------	--------------

輸出 573億弗	25.1%	1.7% (16位)
輸入 545億弗	23.9%	1.5% (17位)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概況

- 스웨덴은 貿易依存도가 매우 높은 國家임.
- 經濟成長에 있어 商品輸出이 重要한 役割
- 商品輸出入 比重('90)

一 貿易構造

- 輸出：原材料·低加工製品에서 高加工
製品 위주로 비중 增大
- 自動車, 機械類, 通信裝備 등이 主종
- 輸入：工產品 比重이 높음
- 自動車, 事務器機, EDP裝備, 플랜트
등이 主종

- 燃料 輸入比重은 減少
(輸入比重 '79年 22% → '89年 7%)

－ 貿易 對象國家

- 全體 商品貿易의 約 3/4이 EC 및 EFTA國家들과 이루어지고 있음
- EC가 全體의 50%이상 차지
- 유럽외의 地域에서는 美國·日本이 주요 交易 相對國
- 開途國과의 貿易比重은 減少趨勢
 - 輸出 : 14.5%('85) → 11.9%('90)
 - 輸入 : 10.8%('85) → 10.2%('90)

〈表 1〉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表 2〉 地域別 輸出入 比重

나. 關稅一般

- － 現行 關稅率 水準은 일반적으로 동경라운드의 協商結果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동경라운드에서 工產品 平均 關稅率 20% 引下
 - 引下後 平均關稅率 : 4.8%
- － '88. 1. 1 HS 導入
 - 品目分類에 있어 從前 5,500여개 品目中서 7,000餘個 品目으로 增加
 - 品目轉換·細分類 과정에서 일부품목의 關稅率 變動이 이루어짐
- － '89. 7 UR協商의 조기 收穫分野로서 열대산품 關稅引下
 - 그러나 이미 대다수 열대산품이 MFN 無稅 또는 GSP惠澤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變動은 크지 않았음.

2. 關稅率 體系

- － 從價稅가 가장 대중을 이루고 있음.

- 全體 品目の 90%이상인 從價稅 賦課 對象

- 最近 其他形態의 關稅賦課對象 品目は 더욱 縮小

- 水産物에 賦課되던 從量稅 상당수가 '88. 1부터 從價稅로 轉換됨.

－ 其他形態 : 從量稅, 選擇稅

- 比重은 낮지만 중요한 品目들에 賦課되고 있음.

- 輸入價格 下落時 關稅率 引上效果 → 低廉한 價格의 輸入品에 대하여 國內産業을 누진적으로 保護

- 從量稅

- 對象品目 : 食用과일, 化學製品 일부 (아교, 성냥, 비료등), 섬유판, 전 등, 해산식품 등

- 選擇稅(alternate tariff rates)

- 輸入品の 價格水準에 따라 從價稅 또는 從量稅를 택일, 賦課
- 對象品目 : 타이어, 인조 필라멘트, 衣類, 紡織物, 모자 등

－ 季節關稅(seasonal tariffs)

- 對象品目 : 菜蔬·과일·花卉類

- 43개 品目 및 品目群(HS 7, 8류의 약 1/2에 해당)

- 토마토, 양파, 양배추, 상치, 포도, 멜론, 사과, 배, 체리, 자두등 견과류 등

- 稅率水準

- 평상시에는 無稅 또는 低率 關稅가 賦課되나 國內 農産物 收穫期 (in-season)에는 높은 稅率로 賦課

- 대부분 낮은 稅率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격차 (격차가 5% 포인트 未滿인 品目は 없음)

3. 關稅率 水準

- 全般的 稅率水準은 낮은 편임.
 - o 平均稅率('88基準, %)

	全 體	工產品	農產物
單 純 平 均	4.7	4.9	2.6
輸入額 加重平均	3.5	3.8	1.6

- o 全體品目の 약 30%가 無稅適用
 - 原資材, 基礎化學製品, 醫藥品, 목재 필프, 新聞用紙, 銑鐵, 船舶·航空機 등
- o 半加工製品 및 最終製品 대부분이 5% 以下稅率 適用
 - 例外: 自動車(6.2%), 纖維 (3~13%), 衣類(13~17%) 등
- 稅率分布
 - o 衣類등 일부 分野를 제외하고는 關稅率 水準이 대체로 비슷함.
 - '88關稅率 標準偏差: 5% 포인트 未滿
 - o Tariff Escalation이 일부 分野에 存在하지만 전반적인 隔差는 상대적으로 낮은 水準임.
- 輸入比重: MFN輸入額의 약 2/3가 5% 以下 稅率로 輸入됨.
 - o 稅率別 輸入比重('86基準, %)

關 稅 率	全 體	工產品	農產物
Free	19	17	41
0.1~ 5%	43	46	16
5.1~10%	25	27	7
10.1~15%	9	10	3
15.1~20%	1	-	2
不 特 定	3	-	31

- 其 他
 - o 農產物의 關稅率 水準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하나, 無稅가 적용되는 農產物의

경우 대부분이 可變賦課金으로 補完裝置가 마련되어 있음.

- o 또한 平均關稅率의 비교시에도 季節關稅 要因은 反映되지 않음.

4. 關稅讓許 現況

- 現行 讓許範圍: 品目數 基準 91%, 輸入額 基準 96%
 - o 農產物의 讓許比率이 工產品의 경우보다 훨씬 낮음
 - 農產物 57%, 工產品 96%, 該當品目讓許(品目數 基準)
 - o 實行稅率과의 關係
 - 讓許品目の 6% 상당 品目は 實行稅率이 讓許稅率보다 낮음
 - o 讓許形態
 - 一部品目(특히 農產物)은 從量稅의 形態로 讓許
 - 이중 一部는 實行稅率이 從價稅로서 運營되고 있음.
- UR 協商서의 讓許計劃
 - o 農產物·工產品 모두 全 品目으로 讓許 範圍 擴大

〈表 3〉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單位: %)

	品目數 基準		輸入額 基準	
	UR前	UR後	UR前	UR後
農 產 物	57	100	73	100
工 產 品	96	100	98	100
全 體	91	100	96	100

5. 特惠關稅制度

가. 貿易協定

-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協定

- 對象國 :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 工產品 : 免稅
- 農產物 : 대부분 EFTA 特惠對象에서 除外되었으나 EC보다 불리한 대우는 하지 못함.
- 水產物 : 當初 EFTA 特惠에서 除外되었으나 '90. 7부터 適用對象에 包含됨.
- 스웨덴 - EC 自由貿易協定
 - 工產品 : 免稅
 - 農產物 : 自由貿易協定 對象에서 제외 (단, 一部品目は 다소 引下된 稅率 適用)
- 其他 兩國間 貿易協定
 - 締結國家 : 멕시코, 브라질,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라크, 말레이시아, 泰國, 中國, 파로 아일랜드, 그리인란드
(파로 아일랜드, 그리인란드는 無稅適用)

나.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沿革
 - '72. 1 最初 導入
 - 以後 對象國 · 對象品目を 점차 擴大
 - '87. 2 最貧國에 대한 特別讓許 施行
- 對象國 : 161個 開途國
 - 이중 42個 最貧國 및 關稅領域은 特別讓許 對象
 - 數量制限없이 無稅適用
 - 其他國家
 - 工產品 : 無稅適用 (例外 : 纖維, 衣類, 신발, 램프, 照明機具)
 - 農產物
 - ┌ 敏感品目 適用除外 - 肉類, 穀物, 설탕
 - └ out-of-season에만 適用 - 花卉

類, 과일 일부

- 불가리아, 루마니아, 中國 : GSP 對象品目の 약 1/2은 適用除外
 - 鐵鋼, 고무타이어, 纖維 · 衣類産業등 國內産業保護 目的
- 原產地 證明
 - GSP 수혜를 위하여는 輸出國의 原產地 證明 發給機關 指定 通報가 이루어져야 함.
 - 現在 GSP 對象國中 67개국이 이를 履行하지 않아 GSP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음.
- Safeguard Clause
 - 發動要件 : GSP 受惠品目の 輸入으로 인하여 시장교란 發生 또는 발생우려시
 - 發動 對象國 : 問題가 되는 該當國家 또는 全體 受惠國家
 - 發動措置 : GSP 特惠稅率대신 MFN 稅率 適用
 - 發動事例 : 현재까지 使用된 적이 없음.

6. 可變 輸入賦課金 (Variable Import Levy) 制度

- 性 格
 - 國內 農業生産을 支援하기 위한 國內市場 · 價格制度이 기반이 되고 있음.
 - 從量稅로서 賦課되는 바, 원칙적으로 世界市場價格과 國內管理價格 (administered domestic prices)의 차액만큼을 賦課
 - 상당부분에 있어 輸入 금지적 效果를 가질 정도의 높은 水準으로 賦課
- 對象品目 : 加工 · 半加工 農產物
 - 現在 420個 品目에 適用
 - 穀 物 : 밀, 호밀, 보리, 귀리
 - 穀物製品 : 밀가루, 전분, 조제식료품

- 일부
 - 감자(전분 포함)
 - 酪農製品 : 액상우유, 크림, 버터, 치즈, 분유
 - 畜産品 : 계란, 가금류·돼지·소·송아지·말·양고기
 - 園藝作物 : 완두콩, 강낭콩
 - 설탕, 설탕과자
 - 채유용 종자, 채유
- 賦課金 水準
 - 賦課金 範圍(從價稅 換算值) : 0~430%이상
 - 賦課金 平均(從價稅 換算值) : 64%
- 其他
 - 一部品目は 통상 매일 賦課水準 再檢討
 - 對象品目 : 穀物, 설탕, 채유용 種子
 - 世界市場價格 變動 反映 目的
 - 一部品目は 國內價格의 上·下限을 설정
 - 對象品目 : 酪農製品, 肉類, 계란
 - 國內價格을 中間 水準에 安定시키고자 하는 目的
 - 國內價格이 變하지 않는 한 輸入 賦課金도 不變

〈表 4〉 스웨덴의 可變賦課金 水準

7. 關稅評價 및 通關制度

- 關稅評價 : GATT 第7條 및 關稅評價協約에 의거
 - '81. 1. 1 關稅評價 規則 施行
 - 課稅價格 : 販賣手數料 및 包裝費 등 一定費用을 加算한 去來價格(transaction value)을 使用
 - 去來價格의 使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別도 節次에 따름
- 通 關

- '74以後 輸入通關은 輸入業者의 通關代行人 및 運輸業者의 責任下에 이루어짐
 - 通關 계류중인 輸入商品은 稅關當局에 의해 許可된 民間 臨時倉庫에 30일간 保管可能(特別한 事由가 있을 경우 期間延長 可能)
- 擔保 納付制(Customs Credit)
 - 輸入業者는 擔保를 提供하고 45일內에 關稅納付 條件으로 輸入申告後 物品搬出 可能
 - 全體 關稅輸入의 99%이상이 同 制度를 利用·徵收됨.
- 즉시 搬出制(immediate release system)
 - 稅關申告 및 稅額決定 以前에 販賣를 위한 輸入商品 搬出 可能
 - 輸入商品 登錄 및 2週以內 書面申告 → 登錄과 동시에 商品 搬出 可能

8.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가. 덤핑防止關稅 및 補助金 相計關稅

- 賦課節次
 - 被害業界의 提訴 → 貿易委員會(National Board of Trade)
 - 貿易委員會는 2個月 以內에 調査에 필요한 충분한 證據가 있는지 與否를 事實判斷, 外務省에 調査開始 與否에 관한 意見 提出
 - 關稅委員會(National Board of Customs) 및 農産物 去來委員會(National Agricultural Market Board)와 協議
 - 外務省은 調査開始 與否에 관한 最終 決定
 - 調査開始가 決定되면 貿易委員會는 9個月 以內에 外務省에 調査結果 報告 및

必要措置 建議

- 關稅賦課
- 不服與否
 - 提訴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抗訴 可能
 - 그러나 賦課決定 內容에 대한 不服은 不可
- 暫定關稅(Provisional duties)
 - 調查期間中 貿易委員會의 建議에 따라 最終判定 以前에 暫定關稅 賦課可能
- 價格約束(Pricing undertaking)
 - 輸出業者의 價格約束 合意가 있을 경우 貿易委員會의 建議에 따라 進行中인 調査의 終結 可能
- Sunset Clause
 - 法制上으로는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의 자동적인 適用滿了 時限은 規定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85년에 制定된 『덤핑 및 補助金 調査에 관한 令』의 說明文(explanatory statement) 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
 - guideline으로서, 賦課期間은 3年을 超過하여서는 안됨
 - 被害를 주는 덤핑 · 補助金 支給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賦課
- 賦課事例
 - 相計關稅는 賦課된 적이 없으며 덤핑防止關稅의 賦課條件도 소수에 불과
 - 덤핑提訴 處理結果('80~'90)

〈表 5〉 덤핑提訴 處理結果('80~'90)

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 GATT 19條에 의거한 Safeguard 發動事例는 없음
- 별도의 立法措置는 없으나 GATT 協定 및 政府에 關稅 · 數量制限措置 權限을 賦與한 關稅法 및 輸出入規制에 관한 法令

에 根據하여 措置 可能

9. 其他 關稅政策 手段

가. 免稅(Tariff Suspension)

- 國內 生産이 되지 않는 原資材의 輸入時 免稅 可能
 - 「關稅免除 등에 관한 法律」에 의거, 일정기간(4年) 免稅
 - 對象品目 : 化學製品, 플라스틱, 機械등 300여개
- 其他 特定한 경우에 政府가 免稅特惠 賦與 可能
 - 一部 化學製品, 機械 · 裝備등에 한정

나. 還 給

- 一般還給
 - 對 象
 - 輸出商品 製造에 所要된 原資材의 輸入
 - 造船 · 海運産業에 所要되는 原資材의 輸入
 - 當初 輸入時와 동일한 狀態로 輸出되는 商品의 輸入
 - 要件 : 事前許可 必要
- 特別還給
 - 對 象
 - 使用되지 않고 再輸出되는 商品의 輸入
 - 實驗用 · 其他 유사 용도로만 使用되는 商品의 輸入
 - 事前許可 不必要
 - 實質的으로는 配達錯誤, 商品損傷등의 경우에 活用
- 減額還給
 - 對 象
 - 一時使用 目的의 輸入
 - 其他 特殊한 경우

- 減額基準：使用期間 每月 5%씩 還給 額 減額
- 事前許可 不必要

10. 觀察 및 評價

- 스페인은 關稅率 體系가 단순하며 平均關稅率도 낮은 水準임.
 - MFN 輸入이 아닌 自由貿易協定(EC, EFTA 등)에 의한 無關稅輸入이 總輸入의 약 3/4을 차지
- 그러나 國內産業 脆弱分野에 대하여는 필요한 保護措置를 講究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相當수준의 關稅障壁을 維持하고 있음.
 - 農産物에 있어서는 낮은 關稅率 대신 高率의 可變賦課金을 賦課
 - 또한 一部 品目에 대하여는 季節關稅를 活用, 國內農業 保護
- 輸入被害 救濟制度의 活用 빈도는 美國·EC등에 비하여 미약한 水準임.
 - 關稅行政은 財務長官 傘下의 關稅委員會가 擔當하지만 덤핑·補助金調查, 判定은 外務省(貿易局) 및 同 傘下 貿易委員會가 擔當

0.9% 占有

- 貿易構造

- 輸出：'85년부터 工產品 輸出 比重이 1次產品 輸出 比重을 앞지름
- 工產品 輸出 比重：全體 輸出의 25%('80年代初) → 64%('80年代末)로 增加
- 主要 輸出品目：衣類, 事務器機·通信裝備, 완구, 가죽제품, 보석류, 신발, 天然가스등
- 輸入：中間財등 工產品 輸入 위주
- 主要 輸入 品目：化學製品, 事務器機·通信裝備, 其他 非電氣式機械등
- 燃料輸入比重：總 輸入의 30%('80年代初) → 8%('80年代末)로 減少

- 貿易 對象國

- 輸 出：美國, 日本, EC가 3大 輸出對象國
- 其他 主要 對象國은 中國, 臺灣, 濠洲, 캐나다, 韓國, UAE등임
- 輸入：日本, EC, 美國이 3大 輸入對象國
- 其他 主要 對象國은 싱가포르, 臺灣, 中國, 韓國, 말레이시아 등임

Ⅶ. 泰 國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90)：輸出 世界 31位, 輸入 世界 22位の 國家(EC를 1個國으로 간주시에는 輸出 23位, 輸入 16位)
 - 輸出：228億弗→世界 總 輸出의 0.7% 占有
 - 輸入：337億弗→世界 總 輸入의

〈表 6〉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表 7〉 工產品 輸出入 比重

〈表 8〉 主要 對象國別 輸出入 比重

나. 關稅一般

- 國內經濟 活動保護, 각종 品目の 輸出 增進, 특정부문에의 投資誘致를 위하여 다양한 措置를 施行
- 製造業部門은 높은 關稅로 保護하고 있으며 機械와 其他 投入財보다는 完製品에 대한 關稅가 보다 높음
- 輸出獎勵를 위한 輸出用 投入財 및 輸出主導 事業所得에 대한 關稅 및

- 內國稅 경감
 - 國內使用, 自然資源·環境保全을 위하여 一部品目에 輸出稅 賦課
 - 타피오카등 150餘個 品目(HS 4單位 基準)은 輸出을 制限
- 關稅와 內國稅 制度의 合理化 推進
 - '90. 9月 機械設備의 法定關稅를 5%로 引下
 - 長期的으로 實行稅率이 引下되는 趨勢이며 關稅와 內國稅의 減免制度가 단순화됨
 - 關稅率體系를 36等級에서 6等級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計劃 檢討
- 其他 유인책
 - 國內 生産調整을 위한 價格支持, 低利融資, 農村開發事業 政策등을 實施
 - 研究·開發(R & D)과 中小企業促進을 위한 支援 提供

- 事項이며 實行關稅率은 財務部長官이 閣議의 審議를 거쳐 改正 가능한 바, 一部品目은 法定稅率과 實行稅率이 상이하하며 實行稅率은 점차 引下 趨勢임
- 에너지 節約, 環境保護, 電力生産·送電·配電 등과 관련된 特定 完製品 生産을 위하여 輸入된 物品은 關稅를 引下해 주고 있음
- 그러나 關稅率의 잦은 변경으로 關稅率운용의 안정성 결여
- 特惠貿易協定國을 제외한 모든 貿易相對國에게 MFN稅率이 適用됨
 - 總輸入의 90% 이상이 MFN稅率을 적용받아 輸入됨
 - ASEAN 會員國으로부터의 輸入品目에 대하여 特惠關稅賦與 및 汎開途國間 特惠貿易制度(GSTP)下에서 11個 品目 特惠關稅 賦與

2. 關稅率 政策推移

- 從前에는 關稅政策 樹立時 財政輸入이 제1의 고려사항이었음
 - 關稅輸入의 總歲入에 대한 比重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90年 現在 約 24% 점유
- 現在는 財政黑字로 인하여 關稅政策 樹立時 彈力性을 갖게되었으며 關稅가 國內生産 費用 및 物價上昇을 통하여 輸出에 미치는 惡影響을 認識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을 시행
 - 機械, 原資材, 中間財에 관한 關稅 引下制度 導入
 - 시멘트, 石油등 主要物品 부족시 物價上昇 效果를 완화하기 위하여 關稅와 消費稅 引下
- 基本關稅率(MFN 稅率) 改正은 立法

3. 關稅形態 및 平均關稅率

가. 關稅形態

- 從價稅가 主宗을 이루고 있음
 - 全體品目의 3/4이상이 증가세 부과 대상
- 其他
 - 從量稅: 全體品目의 約 3% 상당에 賦課
 - 選擇稅: 全體品目의 約 20% 상당에 賦課
 - 關稅率表에 從價稅와 從量稅를 명기 하고 稅額이 보다 큰 稅種을 適用
 - 全體 農産物의 40%가 選擇稅 適用 對象임

〈表 9〉 分野別 關稅形態

나. 平均關稅率

- 매우 높은 關稅水準을 나타내고 있음
 - o 平均 法定(MFN) 稅率: 單純平均 44%, 가중평균 36%
 - o 分野別로는 鑛石·金屬類의 平均稅率이 25.9%로 가장 낮고 신발·여행용품이 90.6%로 가장 높음

〈表 10〉 分野別 稅率水準 및 MFN 輸入比重

다. 關稅率 分布

- '90年 中盤 현재 法定稅率(MFN 稅率)은 최저 無稅에서 최고 20%까지 걸쳐 있음
 - o 대다수 品目的 關稅率이 위 最高稅率 보다 낮은 水準이기는 하나 農產物은 最高稅率이 60% 以上인 品目이 全體品目的 59%를 차지
- 全體의 절반이상 品目的 法定稅率이 35% 以上 水準임
 - o 工產品은 法定稅率이 100%를 超過하는 品目數가 全體品目數의 10% 水準임
 - o 또한 農產物은 全體의 절반 이상 品目이 60% 以上の 高關稅對象 品目임

〈表 11〉 稅率分布別 品目比重

라.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

- 農產物
 - o 法定稅率 側面에서는 加工도가 높을 수록 稅率이 낮아지는 逆關稅率體系를 나타냄
 - o 實行稅率에 있어서는 半加工品の 稅率이 가장 높은 水準임
- 工產品
 - o 法定稅率 및 實行稅率 모두 加工度

가 높아질수록 關稅率이 높아지는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보이고 있음

〈表 12〉 加工度別 輸入比重
 〈表 13〉 加工度別 稅率構造

4. 關稅讓許 및 特惠關稅

가. 關稅讓許

- 現行 GATT 讓許比重은 全體 品目的 約 3% 水準에 不過
 - o 輸入額 基準으로는 約 12% 相當品目 讓許
- UR協商에서는 讓許範圍를 品目數 基準으로 約 37% 水準으로 擴大
 - o 農產物 讓許比重이 工產品 讓許比重 보다 品目數 基準으로는 낮으나 輸入額 基準으로는 훨씬 높음

〈表 14〉 UR協商 前後 關稅讓許 比較

나. 特惠關稅

- ASEAN 會員國間 特惠關稅는 特惠貿易協定(PTA), 産業化計劃事業, 産業補完制度, 産業合作投資, 長期契約制度에 包含된 輸入品등에 대하여 賦與
 - o 特惠貿易協定에 의한 會員國間 特惠品目은 總 15,297品目이고 同 特惠品目에 대한 特惠幅은 25~50% 水準임
 - o 長期的으로는 特惠品目 및 特惠幅의 擴大를 推進目標로 하고 있음
- '87. 12. ASEAN 特惠貿易協定の 對象 擴大
 - o 例外品目を 總品目的 10% 이하, ASEAN間 貿易의 50%이하로 減縮

- ASEAN 國產資材 사용 요건을 50%에서 30%로 引下하여 利用條件을 改善
- ASEAN國에 賦與하는 特惠品目的 확대에도 불구하고 泰國의 總輸入額 중 ASEAN國으로부터 輸入比重은 10%를 약간 上회하는 水準에 그치고 있음
- 또한 泰國은 汎開途國間 特惠貿易協定(GSTP)의 서명국이며 11個 品目에 대하여 特惠關稅를 제공하고 있으며 同品目的 特惠幅은 10~20% 水準임

다. 關稅引下

- 關稅引下는 關稅率表에서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關稅를 引下하는 경우와 具體的 用途에 따라 關稅를 引下하는 경우가 있음
 - 關稅引下가 適用되는 具體的 用途로는 에너지節約, 環境保護, 電力生産·送電·配電, 石油産業의 運營등임
- 投資委員會(Board of Investement)는 特정한 事業에의 投資장려를 위하여 廣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關稅引下를 해주고 있음
 - 關稅와 其他 內國稅의 主要한 引下基準으로 事業場所와 輸出主導産業을 들 수 있음
 - 방콕에서 원거리 地域, 投資促進地域, 工團地域, 輸出促進地域에의 投資에 유인이 주어짐
 - 輸出主導事業이란 적어도 生産量의 30% 輸出, 業務開始後 3年間에 生産量의 80% 輸出事業을 말함.
- 投資振興法에 의거 投資委員會는 機械에 대한 關稅 免稅와 原資材 또는 필수 原料에 대하여 90%까지 關稅引下 可能

- 유사한 品質의 物品이 충분하지 못하고 國內에서 生産 또는 組立되지 않는 경우 關稅를 引下

5. 關稅評價·原產地規定 및 可變賦課金

가. 關稅評價

- GATT 關稅評價協約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GATT 關稅評價委員會의 倂서버국임
- 課稅價格을 산정하기 위하여 「實際市場價格(true market value)」을 사용
 - 이는 輸入時에 輸入地에 同種·同質 物品의 都賣 現金價格을 말함
 - 대체로 C.I.F.價格이 實際市場價格으로 간주됨

나. 原產地 規定

- 原產地 證明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는 않음
- 단, 다음의 경우 原產地證明 必要
 - ASEAN 特惠關稅 利用時
 - 커피·커피製品등 國際商品協定에 따라 必要한 경우
 - 其他: 輸入業者, 銀行등에서 要求하는 경우가 있음

다. 可變賦課金

- 一般的으로는 가변부과금을 賦課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非關稅措置를 關稅化한 수개품목은 이와 유사한 追加課徵金을 賦課하고 있음

6. 觀察 및 評價

- 종전에는 關稅率 構造를 설정할 때 財政收入만을 고려하여 高關稅率체계를 유지하였으나 現在는 財政黑字 또는 高關稅의 輸出에 미치는 惡影響을 고려 政策的으로 關稅를 다소 引下하는 趨勢임
- 基本稅率은 法定事項으로 하고 實行稅率은 財務部長官이 內閣의 議決을 거쳐 改正이 가능한 바 일반적으로 實行稅率은 法定稅率보다 낮게 運用하는 趨勢임

-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와 關聯하여서는 農產物은 輸入比重이 낮은 加工製品의 關稅率이 낮은 역관세율 構造를 나타내며, 工產品은 輸入比重이 낮은 原材料의 關稅率이 낮아지는 構造를 이루고 있음
- ASEAN國에 賦與하는 特惠品目的의 擴大, 特惠品目的의 特惠幅 심화에도 불구하고 總輸入에 대한 ASEAN國으로부터 輸入比重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에 머무르고 있음

〈表 1〉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單位 : %)

	輸 出				輸 入			
	'79	'80	'87	'88	'79	'80	'87	'88
自 動 車	12.4	11.7	15.7	14.8	6.4	5.6	10.3	10.6
化學製品	5.3	5.3	6.8	7.0	8.9	8.1	9.7	9.7
事務器機·通信裝備	6.0	6.1	6.5	7.2	4.9	4.9	8.1	8.9
電氣式機械·裝置	3.7	3.7	4.0	3.8	4.1	4.1	5.2	5.4
發電用 機械	1.3	1.1	1.3	1.4	1.0	0.9	1.3	1.2
其他 消費財	5.7	6.0	7.1	7.1	7.9	8.1	10.4	10.5
其他 非電氣式機械	13.3	13.8	12.9	13.0	8.1	8.9	10.2	10.2
其他 半加工製品	16.6	16.7	17.6	17.3	7.0	7.2	8.2	8.2
其他 輸送裝備	4.3	3.2	2.9	2.6	3.1	2.3	3.1	3.2
衣 類	0.9	1.0	0.8	0.7	4.0	4.0	5.0	4.6
織 維	1.3	1.4	1.3	1.1	3.2	2.9	2.8	2.6
鐵 鋼	7.8	7.4	5.8	6.4	4.6	4.2	3.4	3.7
非鐵金屬	2.3	2.3	1.7	2.0	2.4	2.7	1.9	2.5
原鑛·鑛產品	2.2	2.2	1.4	1.4	1.9	1.9	1.5	1.9
原 材 料	10.1	9.6	7.8	7.8	2.3	2.3	2.7	2.6
燃 料	3.2	4.5	2.9	2.2	21.9	24.1	8.9	6.8
食 品	2.4	2.4	2.0	1.9	7.7	7.1	6.6	6.6
其 他	1.2	1.6	1.5	2.3	0.6	0.7	0.7	0.8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金 額 (億弗)	276	309	444	500	286	334	406	455

〈表 2〉 地域別 輸出入 比重

(單位 : %)

	輸 出		輸 入	
	'85	'90	'85	'90
E C (西 獨) (英 國) (덴 마 크) (프 랑 스)	48.8 (11.5) (9.9) (8.3) (4.8)	53.9 (14.0) (9.9) (6.8) (5.3)	56.1 (17.9) (14.1) (6.8) (4.7)	55.2 (19.6) (8.2) (7.5) (5.0)
E F T A (노 르 웨 이) (핀 란 드)	19.1 (10.5) (5.7)	19.0 (8.4) (6.8)	15.7 (6.1) (6.6)	17.9 (7.5) (7.0)
美 國	11.7	9.0	8.5	8.6
日 本	1.4	2.1	4.9	5.2
先 進 國	83.6	87.1	85.2	87.9
開 途 國	14.5	11.9	10.8	10.2
아 시 아 아 프 리 카 中 南 美 유 럽 中 東	4.2 1.9 2.1 2.6 3.8	4.5 1.1 1.9 2.1 2.4	3.1 1.7 2.8 2.7 0.6	5.0 0.4 1.8 1.8 1.1
蘇 聯 · 其 他	1.9	1.0	4.0	1.9

〈表 4〉 스웨덴의 可變賦課金 水準

品 目 群	可 變 賦 課 金 水 準	
	金額(SEK / 100kg)	從價稅 換算值(%)
食 料 品	30~3,750	1~267
신선·저장과일	92~110	5~ 11
신선·건조채소	30~190	5~ 52
조제·저장채소	150~396	2~ 86
코코아 및 동 조제품	340	11~ 42
당류·과자	80~340	5~155
제분공업 생산품 및 곡물제조품	40~400	6~196
곡 물	65~ 85	3~ 82
기타 식료품	30~3,750	3~267
動 物 및 그 生 産 品	50~3,250	1~432
산 동물	810~1,085	1~ 39
신선·냉장·냉동육	50~3,250	1~432
조제·저장육 및 기타 육제품	50~3,100	0.2~113
油 菜 · 油 脂 및 그 生 産 品	70~1,345	1~292
식물성유, 종자, 유박	70~646	1~208
기타 유지·납 및 그 생산품	817~1,345	4~292

品 目 群	可 變 賦 課 金 水 準	
	金額(SEK /100kg)	從價稅 換算值(%)
飲料・酒類	18~100	4~ 22
과일・채소쥬스	100	7~ 22
기타 음료・주류	18~27	4~ 6
酪農製品	60~1,860	3~191
액제 밀크	305~1,860	25~191
버 터	1,345	57
치 즈	60~1,330	3~ 71
其他 植物性 農產品	45~1,130	16~ 391
全 體	18~3,750	0.2~432
平 均	680	64

〈表 5〉 덤핑提訴 處理結果('80~'90)

對 象 品 目	輸 出 國	處 理 內 譯
목재 파티클보드	체코, 폴란드	暫定關稅賦課(체코 42%, 폴란드 35%) 및 價格約束으로 終結
스틸래디얼 타이어	韓國, 유고	無被害 判定
플라스틱 코팅 철판	西獨	提訴 取下
하드보드	폴란드, 蘇聯	暫定關稅賦課(30~40%) 終了以後 最終 公式判定은 未決
PVC 파이프	폴란드, 체코	調查 進行中
肥 料	루마니아, 西獨	調查 進行中
合 板	美國, 체코	調查開始 與否 檢討中

〈表 6〉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單位: %)

	輸 出				輸 入			
	'78	'80	'87	'88	'78	'80	'87	'88
食 品	51.3	46.1	37.0	34.6	4.3	5.2	5.2	5.8
原 材 料	12.1	11.0	8.2	8.0	4.2	3.5	5.2	4.4
原 鑛 · 鑛 產 物	2.0	3.1	0.6	1.0	2.2	1.5	1.9	2.9
燃 料	0.1	0.6	0.7	0.8	21.1	30.5	13.3	7.6
非 鐵 金 屬	9.0	10.3	1.0	0.7	2.1	2.2	1.8	2.2
鐵 鋼	0.3	0.8	0.8	1.1	7.3	5.5	7.3	8.4
化 學 製 品	0.5	0.7	1.7	1.6	13.6	11.4	14.5	12.7
其 他 半 加 工 品	5.0	5.6	9.1	7.9	5.4	4.7	6.4	5.6
發 電 用 機 械	0.0	0.0	0.2	0.0	0.4	0.4	0.7	0.4
其 他 非 電 氣 機 械	0.2	0.4	1.6	1.9	10.9	8.4	9.9	11.5
事 務 器 械 · 通 信 裝 備	0.2	0.2	6.6	8.6	2.1	2.0	6.7	11.7

〈表 6〉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單位：%)

	輸 出				輸 入			
	'78	'80	'87	'88	'78	'80	'87	'88
電氣機械・裝備	2.7	5.0	3.1	4.1	4.4	4.9	7.5	4.4
自 動 車	0.1	0.2	0.2	0.8	8.2	4.3	5.6	7.6
其他輸送裝備	0.1	0.2	0.2	0.3	4.2	4.7	1.8	3.8
織 維	6.4	5.1	5.6	4.8	2.2	1.8	3.8	3.0
衣 類	3.6	4.1	12.9	12.1	0.1	0.0	0.1	0.0
其他消費財	3.1	2.7	9.7	10.9	3.1	2.6	4.0	3.9
其 他	3.1	4.0	0.9	0.7	4.3	6.4	4.5	4.1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金額 (億 弗)	41	65	117	160	54	92	130	202

〈表 7〉工產品 輸出入 比重

(單位：百萬弗)

	'80	'90
輸 出 (工產品 輸出比重)	6,505 (24.6%)	22,798 (64.0%)
輸 入 (工產品 輸入比重)	9,214 (52.1%)	33,732 (83.0%)

〈表 8〉主要 對象國別 輸出入 比重

(單位：%)

輸 出				輸 入			
國 家	'82	'86	'90	國 家	'82	'86	'90
美 國	12.7	18.1	22.7	美 國	13.4	14.3	10.7
E C	23.5	21.4	20.9	E C	11.7	15.1	14.8
日 本	13.7	14.2	17.4	日 本	23.5	26.4	30.6
中 國	4.4	3.1	1.2	中 國	2.7	2.9	3.4
臺 灣	1.2	1.6	NA	싱 가 폴	6.3	6.6	7.7
濠 洲	0.1	1.8	1.6	臺 灣	2.8	3.6	NA
카 나 다	0.4	1.4	1.3	韓 國	1.8	2.4	3.0
韓 國	1.2	2.8	1.8	스 위 스	0.9	1.7	1.8
U A E	0.7	1.7	1.5	말 레 이 지 아	5.2	4.2	3.2
홍 콩	4.9	4.0	4.6	濠 洲	2.0	1.8	1.7
先 進 國	53.4	58.7	66.7	先 進 國	54.7	62.5	62.7
開 途 國	43.8	40.1	32.3	開 途 國	44.3	36.1	35.7
其 他	2.8	1.1	1.0	其 他	0.4	0.9	1.4

〈表 9〉 分野別 關稅形態

('89 基準)

分 類	品 目 數			
	計	從價稅	選擇稅	從量稅
原皮, 가죽과 모피	70	40	30	0
고 무	94	66	28	0
木材와 코르크	83	82	0	1
펄프, 紙와 판지	159	42	116	1
纖維와 衣類	833	517	316	0
鑛物製品과 肥料	254	200	53	1
귀석과 귀금속	49	49	0	0
鑛石, 金屬	628	411	140	77
石炭, 石油, 天然가스	45	25	2	15
化學製品	825	667	153	5
非電子器機	516	516	0	0
電子器機	249	233	16	0
輸送裝備	140	140	0	0
精密, 科學制御器機, 攝影機, 時計類	198	194	4	0
신발과 旅行用品	45	42	3	0
攝影, 映寫機	41	38	0	3
家 具	27	27	0	0
녹음기나 재생기등 音響器機	50	50	0	0
완 구	46	41	1	4
藝術品과 蒐集品	12	12	0	0
화기, 탱크, 탄약과 기타 戰鬥用 車輛	18	12	6	0
事務用品	20	17	3	0
다른호에 계기되지 않은 製造品	102	86	14	2
食 料 品	285	69	209	7
穀 物	16	0	0	16
動物과 그 製品	85	74	11	0
유채, 유지와 그 製品	108	33	53	22
절화, 食物類와 채소	39	27	10	2
飲料, 酒類	31	1	26	4
酪農製品	22	16	6	0
魚類, 패각류와 그 製品	102	93	9	0
담 배	9	0	9	0
其他 動物性 農産物	19	19	0	0
其他 植物性 農産物	44	41	2	1
總 計	5,264	3,880	1,220	161

〈表 10〉 分野別 稅率水準 및 MFN 輸入比重

(’88 基準, %)

分 類	MFN 平均稅率		關稅率分布		MFN 輸入 比 重
	單 純	加 重	最 高	最 低	
신발·旅行用具	90.6	61.8	30	100	94.9
纖維·衣類	74.2	40.4	0	100	96.1
家 具	70.9	70.9	20	80	98.0
담 배	60.0	60.0	60	60	100.0
魚類·조개류 및 同 製品	60.0	60.0	60	60	85.1
食 糧	53.5	44.9	0	65	94.2
飲料·酒類	53.3	59.9	0	60	99.7
其他 조제품	53.0	33.3	0	100	99.5
樂器, 音響記錄·再生機器	51.4	57.9	40	60	90.4
輸送裝備	49.3	62.9	3	200	99.7
動物과 그 製品	45.9	4.3	0	60	99.5
事務用品과 文具類	40.6	40.6	4	60	94.6
고 무	40.0	39.2	0	60	94.8
원피·가죽	39.8	33.5	10	100	99.1
玩 具	39.5	44.1	5	80	93.8
電氣器機·裝備	39.2	35.8	5	100	90.7
화기, 총포탄, 탱크 및 기타 장갑차	37.3	26.0	0	40	99.4
酪農製品	37.1	22.2	10	65	99.9
寫眞 및 映畫用品	36.5	37.3	0	40	98.6
鑛物性 生產品 및 肥料	35.6	29.2	0	90	88.0
專門科學用 制御器機, 寫眞器, 時計 化學製品	35.5	36.0	10	60	94.3
化學製品	34.7	34.9	0	100	92.8
채유용 種子, 油脂 및 이들의 製品	33.9	17.3	10	60	95.7
기타 動物性 生產品	33.3	32.8	0	60	99.5
切花·食物·菜蔬	33.0	30.0	5	60	72.2
非電氣式 機械	32.7	32.6	5	80	84.6
펄프·종이와 페이퍼보드	32.1	23.3	0	60	89.6
藝術品·수집품	31.7	58.2	0	60	100.0
貴石과 貴金屬	31.4	13.0	0	60	99.4
其他 動植物性 製品	31.0	19.2	10	65	96.4
나무와 코르크	29.5	14.1	0	70	33.5
石炭, 石油, 天然가스	26.9	25.5	10	40	40.9
原鑛石과 金屬	25.9	17.6	4	60	94.0
穀 物	NA	NA	NA	NA	NA
計	44.0	35.7	0	200	89.6

〈表 11〉 稅率分布別 品目比重

(’88 基準, %)

稅 率	農 產 物	工 產 品	計
無 稅	2.1	1.1	1.3
0.1 ~ 5	0.7	1.5	1.4
5.1 ~ 10	3.8	3.3	3.4
10.1 ~ 15	0.4	3.4	3.0
15.1 ~ 20	0	3.0	2.6
25	0.8	3.3	3.0
30	13.0	30.2	27.8
35	7.2	12.2	11.5
40	12.0	14.6	14.2
45	0	0.1	0.1
50	0.8	2.8	2.6
60	58.1	6.9	14.0
65	1.0	0	0.1
80	0	7.4	6.4
100	0	9.7	8.4
200	0	0.3	0.2
計	100.0	100.0	100.0

〈表 12〉 加工度別 輸出比重

(’88 基準, %)

	比 重	
	總 輸 入	商 品 群 輸 入
計	100	
農 產 物	6.4	100
原 材 料	3.9	60.8
半 加 工 品	0.1	1.8
加 工 品	2.4	37.4
工 產 品(石 油 除 外)	88.2	100
原 材 料	9.0	10.2
半 製 品	24.4	27.7
完 製 品	54.8	62.1
石 油	5.3	100
粗 油	4.7	88.9
精 製 油	0.6	11.1

〈表 13〉 加工度別 稅率構造

(加工平均, %)

區 分		原 材 料	半 加 工 品	加 工 品
農 產 物	法 定 稅 率	55.0	41.7	30.0
	實 行 稅 率	6.2	36.2	16.9
工 產 品	法 定 稅 率	11.7	31.7	41.7
	實 行 稅 率	2.3	10.0	13.8

※ 法定稅率은 '88年, 實行稅率은 '89年 基準임

〈表 14〉 UR協商 前後 關稅讓許 比較

(%)

	品 目 數 基 準		輸 入 額 基 準	
	U R 前	U R 後	U R 前	U R 後
農 產 物	4.3	28.8	18.9	66.7
工 產 品	2.7	38.8	11.8	29.9
全 體	2.9	37.1	12.2	32.1

第 120 號

- 1970年 10月 28日 登錄 / 마-355호
- 1993年 7月 30日 發行(7月號)
- 發行兼 編輯人 / 千命基
- 發行處 / 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 瑞草區 方背洞 1002-6)
- 印刷人 / 한라인쇄 電話 / 503-3011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실천강령을 준수한다.

食品工業